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3209
-----------	------

2022년 6월 14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

나. 제안일자 : 2022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 제안이유

- 서울시시설공단에서 대행·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을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민간업체)

나. 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2. 7. 1. ~ '23. 12. 31.
- 대상시설 :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
 - 주소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 시설규모 : 대지 800㎡, 주차구획 64면



다. 위탁 필요성

- 서울시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전문적인 시설관리 필요성이 낮은 주차장에 대해서 제3자(민간업체)에게 위탁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개선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

- 소규모 노상주차장 위주인 대상시설을 공단 직영 대신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단 조직 비대화 방지

라. 추진방법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

※ 여의도공원 노상주차장은 산월여의자하차도 공사로 인해 2016년 폐쇄 후 2021년 11월 복구됨에 따라 2020년 일괄 위탁 동의 시 제외되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5.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부채납한자(단,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② ~ ③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신월여의지하차도¹⁾ 공사로 폐쇄되었던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이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복구됨에 따라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대행·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제3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월여의지하차도 개요

- 위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 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소형차 전용)
- 공사기간 : 2015. 10. 16 ~ 2021. 4. 16
- 총사업비 : 7,131억원(시비 1,096억원, 민간자본 6,035억원)
- 시행자 : 서울터널(주)

나. 검토의견

■ 여의도공원 노상 공영주차장 현황 및 그간의 운영 경위

- 여의도공원 공영주차장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대지면적 800㎡, 총 구획수 64면인 노상주차장으로서 서울시는 2010년 ‘그린 ITS 주차시스템’ 도입²⁾과 함께 동 주차장을 강남4구역으로 분류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되었음
- 하지만, 2015년 10월 여의도와 신월동을 잇는 ‘신월여의지하차도’ 공사가 착공되면서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같은 해 12월 동 주차장은 폐쇄되었고 2021년 4월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여의도 공영주차장이 복구됨에 따라 주차장 운영을 재기³⁾할 계획임
- 복구된 여의도공원 공영주차장은 기존 64면에서 주차장 도로폭 확보⁴⁾ 및 소방차주차구획 설치등의 이유로 54면⁵⁾으로 축소되고 이 중 영등포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물품 창고 등의 목적으로

2) 보도자료, 서울시, 6개 권역 104개 주차장, 시영 주차장 위탁사업자 확정 (리프트아시아, 2010.11)

- 그린 ITS 주차시스템 : 차량 출입·주차요금정산 자동화를 통해 주차권을 없애고 환경을 보호

- 서울시가 강북권 강남권 6개 권역의 시영주차장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아마노코리아는 (중략) 여의도공원 외 47개소 등 3권역(63개소 3천7백65구획)을 수탁받았다

3) 주차계획과-11923('21.10.26) 「여의서로 주차장 복구에 따른 운영계획 제출요청」

- 여의서로 주차장이 아닌 여의도공원 주차장임

4) 여의도공원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안),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0986(2022.6.28.)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라 직각주차에서 사선주차로 구획선 변경으로 총 54면

5) 주차구획 50구획 : 일반 42, 장애인전용 2, 여성 6

※영등포경찰서 4면 : 집회 및 시위물품 창고, 견인차 주차공간)

요청한 4면⁶⁾을 제외하고 50면의 주차구획이 운영될 예정임

■ 제3자 위탁에 대한 검토의견

1) 공단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현황

- 서울시는 관련 조례⁷⁾에 따라 서울시 공영주차장 전체 134개소를 공단에 대행·위탁하고 있으며, 이중 46개소는 공단 직영으로, 나머지 88개소는 제3자(민간, 구청,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지난 '20년 9월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통해 의결⁸⁾ 받은 바 있음
- 이후 주택재개발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일부 주차장이 폐쇄되고 '22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129개소로 축소⁹⁾ 되었으며 공단 직영을 제외한 80개소는 제3자 위탁을 통해 운영 중임(자치구 14개소, 상인회 4개소¹⁰⁾, 민간업체 62개소 위탁)

6) 「여의도공원 앞(여의서로) 노상주차장 제거 또는 사용요청」,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6167(2021.6.11.)

7)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8)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2020.9.8, 상정·의결), 본 회의(2020.9.15., 상정·의결)

9) 「주차시설운영처 종합현황」, 서울시설공단, 2022.5

10) 상가연합회(4) :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남산상인연합회, 신중부시장상인회, 평화시장상인회

※ 참고 : 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① 위탁 업무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② 시설 현황 : 129개소, 16,749구획('22.4월 기준)

- 직영 : 49개소 12,347구획

- 제3자 위탁 : 80개소 4,402구획(자치구 14개, 상가연합회 4개, 민간업체 62개)

구 분		총 계		노 상		노 외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총 계		129	16,749	63	1,671	66	4,998
공 단 직 영		49	12,347	12	86	37	2,879
제3자 위탁	소 계	80	4,402	51	1,585	29	2,119
	민간업체	62	3,462	42	1,410	20	1,354
	자치구	14	874	9	175	9	765
	상인회	4	66				

③ 재위탁 기간 : '21. 1. 1. ~ '23. 12. 31.(3년)

2) 여의도공원 공영주차장의 제3자 위탁 여부

○ 현재 민간업체 위탁중인 주차장(62개소¹¹⁾)은 대부분 소규모 노상 주차장과 지하철역 주변 노외주차장이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위탁 관리의 필요성이 낮고 공단의 운영비용 최소화를 통한 수익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주차장임

○ 또한, 여의도공원 공영주차장은 신월여의지하차도 공사로 폐쇄되기 전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고 인근 여의서로 공영주차장¹²⁾의 경우에도 현재 민간업체에 제3자 위탁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1) 현재 민간업체 위탁 주차장 : 62개소(위탁기간 : '21. 1. 1. ~ '23. 12. 31)

구 분	개소	면수	위탁자	구 분	개소	면수	위탁자	
강남	1권역	7	399	강북	6권역	2	698	
	2권역	6	187		부영그린외 2개소	1권역	6	172
	3권역	8	414		오송파크	2권역	8	328
	4권역	6	293		주식회사 태의	3권역	5	300
	5권역	8	232		이레파크	4권역	6	439

12) 여의서로 주차장(강남4구역)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8-1

- 주차장 구획수 : 84면

- 수탁자 : 주식회사 태의

- 계약현황 : '21.1.1 ~ '23.12.31

동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제3자 위탁하는 것은 공단의 운영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주변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주차장을 제3자 위탁하기 위해서는 주차부스 및 주차센서, 카드단말기 등의 주차관련 시설물 설치가 필요¹³⁾하고 이는 ‘신월여의지하차도’ 공사 이전 동 주차장이 민간위탁 운영되었음을 감안할 때 관련 시설들이 기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공사완료로 인한 공영주차장 복구시 단순히 주차 구획면 설치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물 또한 함께 복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설치주체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주차장 폐쇄 원인자인 ‘신월여의지하차도’ 공사 부서와 원활히 협의해야 할 것임

- 또한, 동 주차장이 '21년 10월 복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자칫 느장행정으로 보일 수 있고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전체의 제3자 위탁기간이 1년 6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점¹⁴⁾을 감안할 때, 운영기간 부족으로 인한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원가조사 등 제3자 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13) 여의도공원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안),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0986(2022.6.28.)

- 소요예산 : 총 35백만원 소요예산

· 주차부스 구입 및 설치 : 약 10백만원 · 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 약 2백만원

· 주차장 센서 설치(50개) : 약 19백만원 · 카드결제단말기 2대 : 360천원

· 주차장 원가조사 용역비용 : 약 3백만원

1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1774)

○ 재위탁 기간 : '21. 1. 1. ~ '23. 12. 31.(3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09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을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민간업체)

나. 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2. 7. 1. ~ '23. 12. 31.

○ 대상시설 : 여의도공원 노상공영주차장

- 주소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 시설규모 : 대지 800 m^2 , 주차구획 64면



다. 위탁 필요성

-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전문적인 시설관리 필요성이 낮은 주차장에 대해서 제3자(민간업체)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개선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
- 소규모 노상주차장 위주인 대상시설을 공단 직영 대신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단 조직 비대화 방지

라. 추진방법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

※ 여의도공원 노상주차장은 신월여의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2016년 폐쇄 후 2021년 11월 복구됨에 따라 2020년 일괄 위탁 동의 시 제외되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5.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부채납한자(단,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② ~ ③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 작성자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과 주차계획과 강영호(☎ 2133 - 2375)